

제4편

부록

제1장_ 일반 현황

제2장_ 문예진흥정기공모지원 사업결과

제3장_ 재단 아트센터 대관사업

제4장_ 재단 자문위원/지도위원 명단

제5장_ 재단 연도별 수탁사업 현황

제6장_ 재단 관련 기사 색인



제1장 일반 현황

제1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 1996. 10. 7 조례 제2699호

개정 1998. 11. 9 조례 제2874호

개정 2000. 2. 16 조례 제2974호

개정 2003. 3. 3 조례 제3233호

개정 2003. 11. 26 조례 제329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 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도지사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2장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3조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 도의 문화관광국장, 도교육청 초등교육 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0·2·16〉

③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1.26]
4.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행정담당이 된다.〈개정 98.11.9, 2003.3.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제12조 (계획수립)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육성에 주력한다.

②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등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13조 (주민의 의견반영) ①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도정중점사업의 선정) ①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제15조 (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4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개정 2003.11.26]

제16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1.26>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창극 단·실내악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1.26>

제1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단체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도지정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6>

②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 활동 실적저조등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26>

④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26>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공연·전시 시설의 사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11.26>

제5장 경기문화재단

제19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0조 (사업) 재단은 제19조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3.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4. 도지정 테마박물관의 지원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03.3.3]
6.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재원조성) ①재단은 제20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 및 그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시에는 도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에 의한 출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항전부개정 2003.3.3>

제22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출연금운용의 수익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3.3.3>

제23조 (공유재산의 대부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지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10·7>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받은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 ③(폐지조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는 제19조의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에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제21조제1항의 기금에 귀속한다.

부 칙<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3·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출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경기문화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는 출연금으로 본다.

부 칙<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절.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정 1997. 3. 6 정관제 1호
개정 1997. 10. 23 정관제 2호
개정 1997. 12. 31 정관제 3호
개정 1998. 10. 30 정관제 4호
개정 1998. 12. 12 정관제 5호
개정 2000. 1. 19 정관제 6호
개정 2000. 3. 27 정관제 7호
개정 2001. 6. 30 정관제 8호
개정 2001. 11. 19 정관제 9호
개정 2002. 4. 2 정관제10호
개정 2002. 6. 14 정관제11호
개정 2002. 9. 12 정관제12호
개정 2003. 1. 4 정관제13호
개정 2003. 12. 30 정관제14호
개정 2004. 6. 24 정관제15호
개정 2004. 9. 10 정관제16호
개정 2005. 2. 23 정관제17호
개정 2005. 5. 25 정관제18호
개정 2006. 3. 2 정관제1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은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약칭“GCF”)으로 표기 한다.

제2조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①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의 1번지에 둔다.

②재단의 분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둔다.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기전문화재연구원)
2.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번지(북부사무소)
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8-13(평화누리운영팀)

제3조 (목적) 재단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2.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3. 문화예술 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4. 문화예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5.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6. 문화관광 정보교류 및 도정홍보
7.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8. 테마박물관등 도 지정사업 지원
9. 재능있는 예술인 발굴 및 육성
- 10 지방 향토사 연구
1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탁사무
12. 기타 재단이사장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 (임원) ①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20인 이내 (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인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이사장) ①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도지사

2. 도 문화관광국장

3. 도 박물관장

4.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5.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도의원 2인

6.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

7.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③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감사) ①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도의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②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선임직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선임직 이사 추가 선임의 경우 임기는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과 같이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제한)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3장 이 사 회

제14조 (구성) ①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 (회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재단자문위원회

제20조 (설치)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재단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1조 (구성 및 운영) 재단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 (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도, 시·군 및 그외의 출연으로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④재단은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의 10퍼센트 이상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⑥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7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재원) ①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과 외부 기부금, 위탁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사업계획등의 작성) ①재단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결산서등의 제출) ①재단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 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31조 (사무처) ①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처 (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기획조정실, 문예진흥실과 기타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제32조 (사무처의 조직등) 사무처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기전문화재연구원

제33조 (기전문화재연구원) 문화재 발굴 및 그 관련사업을 위해 재단부설 기전 문화재연구원 (이하 “기문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4조 (사업) 기문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재 학술조사 및 보존사업
2.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3. 문화재 학술조사 관련 수탁업무
4. 기타 문화재 관련 사업 수행

제35조 (조직등) 기문원의 조직, 인원, 업무분장,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기전문화대학

제36조 (기전문화대학)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재단부설 기전문화대학을 둔다.

제37조 (사업) 기전문화대학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관의 문화예술행정 종사자 전문과정교육 및 재교육, 연수사업
2. 문화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별 권역별, 네트워크 방법론 개발
3. 기관·단체의 전통문화 및 일반 문화예술 관련 위임 또는 수탁 교육
4.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종 전문서적 및 정기간행물 출판, 웹사이트 운영개발
5. 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문예분야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사업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제38조 (조직등) 기전문화대학의 조직, 인원, 업무분장,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등)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잔여인력에 대하여 경력과 능력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등 취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시행규정)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 한다.
②다만, 제23조제3항과 제32조 및 제38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단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전이라도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①재단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기본 재산에서 필수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경비로 지출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에서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②재단의 초대 임원의 선임 및 사무처 직원의 임용은 도지사가 한다.

제3조 (설립자) 재단의 설립은 도지사가 하며, 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1997년 3월 6일

설립발기인 경기도지사 이인제

부 칙(2006. 2.2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3절. 주요연혁

년도	일자	내 용	비고
1995	10. 5	○설립동기 : 15대 중점정책 → 5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 ○설립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민법제32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제19조	
	11. 30	○도 행정쇄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	
	12. 18	○공청회 개최	
1996	5. 16	○제1차 토론회 개최	
	7. 23	○도 조례규칙심의회 제1차 심의	
	10. 7	○경기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	
	12. 17	○도 조례규칙심의회 제2차 심의	
1997	1. 31	○도 행정쇄신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심의	
	2. 14	○제2차 토론회 개최	
	3. 6	○경기문화재단 정관제정	
	4. 1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 직제 : 사무총장, 총무부, 기획조정실(문화부, 예술부, 국제부, 사업부) ○정원 : 20명(일반직10, 전문직8, 기능직2)	
		○이사회구성	
	4. 30	○법인설립 등기	
	7. 3	○경기문화재단 출범 (이사장 : 임수복 도행정부지사, 초대총장 : 장석인 사무총장)	
12. 31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 직제 : 사무총장, 총무처(총무부), 문예진흥실(기획부, 문화부, 예술부, 국제부)		
1998	2. 27	○계간 “경기문화예술발행규정” 제정	
	9. 22	○제2대총장 : 양인석 사무총장 취임	
	12. 12	○기전매장문화재단연구원운영규정제정 • 직제 : 원장, 상임지도위원, 연구실장(발굴1팀, 발굴2팀, 유물정리팀, 행정지원팀) • 정원 : 11명(일반직2, 연구직9)	

년도	일자	내 용	비고
1999	4. 1	○재단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	
	5. 7	○계간지 호명 "기전문화예술"로 변경	
	10. 1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정원 : 21명(일반직10, 전문직9, 기능직2) -전문직 1명 증원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운영규정개정 • 정원 : 12명(연구직9, 일반직2, 기능직1) - 행정지원 1명 증원	
2000	1.21	○제3대 백성운 이사장 취임	
	3. 27	○재단 이사장을 도 행정부지사 → 경기도지사	
		○제4대 임창렬 이사장 취임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 기전문화재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직제 조정 - 총무처를 기획조정실(기획부, 총무부, 문화홍보부)로 개편 - 문예진흥실에 문화부, 예술부를 둠 - 기문원에 연구실과 행정지원팀체제로 전환 (상임지도 위원제 폐지) • 정원 조정 : 총33명(일반직12, 전문직10, 연구직8, 기능직3) - 사무총장(1), 기초실14(기획부5, 총무부5, 문화홍보부4) - 문예진흥실 7(문화부4, 예술부3) - 기전문화재연구원11(연구실8, 행정지원팀3)	
	7. 13	○제3대총장 : 홍기현 사무총장 취임	
7. 21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정원 : 총32명(전문직 1명 감원)		

년도	일자	내 용	비고
2001	4. 3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정원 : 33명(기능직 1명 증원)	
	6. 29	○재단 현청사로 이전 • 사 무 소 :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의 6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분사무소 : 기전문화재단연구원	
	7. 30	○직제 및 정원조정 • 직제개편 : 문화홍보부 → 문화사업부 • 정원조정 : 33명 → 38명 (사무총장, 기획부6, 총무팀8, 문화사업부6, 문화·예술부6, 기문원11) • 조직을 팀제로 개편	
2002	4. 2	○「기전문화대학」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	
	6. 14	○재단기 및 심볼마크에 관한 규정 제정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기구 : 2실(4팀) 1원(1팀, 1실) 1대학(3팀) • 정원조정 : 38명 → 46명 (사무총장, 기획팀7, 총무팀8, 문화예술팀6, 문화사업팀4, 기문원11, 기전대학9) • 조직을 팀제로 전면 개편	
	7. 1	○손학규 제5대 이사장(경기도지사) 취임	
	9. 12	○정관개정(직위변경 : 사무총장 → 대표이사)	
9. 13	○송태호 대표이사 취임		

년도	일자	내 용	비고
2003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문화대학 주요 수행사업 개정 - 정관 제37조 ○기전문화대학 운영규정 제정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구 : 2실(4팀) 1원(1팀, 1실) 1대학(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 기 획 팀 → 기획협력팀 - 문예진흥실 : 문화예술팀 → 문예진흥팀 - 기전문화대학 : 학사관리팀 → 교육기획팀, 출판관리팀 → 미디어팀, 초빙교수팀(폐지) • 정원조정 : 45명 → 49명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원 : 9명(전문직8, 연구직1), 감원 : 5명(일반직5)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북부사무소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 경 : 2실(4팀1소) 1원(1팀, 1실) 1대학(2팀) ※문예진흥실에 문예진흥팀, 문화사업팀, 북부사무소를 둠.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조정 : 49명 → 50명(대표이사를 정원에 포함시킴) - 임명직1, 일반직 14, 전문직20, 연구직9, 기능직 7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영문로고 변경(정관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yonggi Cultural Foundation” →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약칭 변경 : “KCF” → “GCF” 	
2004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직제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직제를 통·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직 및 기능직 → 행정직 - 기문원의 연구원 및 촉탁연구원 → 연구직 - 계약직, 일용직, 도위탁 계약직 → 위촉직 • 기문원의 연구원을 정원에서 제외 (사업확장에 따른 인원변동 탄력적 운영) • 정원조정 : 50명 → 46명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명직1, 행정직20, 전문직25 ○재단 취업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정을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평가제도 개선[목표관리제: MBO 시스템 도입] - 임금산정에 ‘호봉제’ 폐지 : 직무성장에 따른 ‘연봉제’ 도입 - 남녀평등, 노사협의회, 성희롱 예방 등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사항을 도입 규정함 	

년도	일자	내 용	비고
2004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및 정권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명직에 대한 구분 신설, 정원의 채용인원에 대한 상한선을 둠 • 각종 위원회에 대해 정의하고 불필요한 부설기관 운영규정 폐지 ○용역사업운영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료 감면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로부터 수탁한 사업은 50%이내에서 감면 단, 경기도가 직접인력을 파견한 경우 30%이내에서 감면 • 수탁요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 계약금액의 구간단위의 범위 확대 : 1억원 → 5억원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직운영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직 채용자격기준, 채용방법, 계약, 연봉지급 기준을 정함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개정(2004. 7. 1)에 따라 재단 취업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간 법정근로시간 : 44시간 → 40시간 - 월차유급휴가 폐지, 8할이상 출근시 15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사용촉진 신설 - 유급생리휴가 무급화, 신규채용 제한연령 폐지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태호 대표이사 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기간 : 2004. 9. 13~2006. 9.12 ○정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화축전사무처 소재지를 재단 분사무소로 추가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741번지(現)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예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제도에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 각종 관련 서식을 현행 '규정' 에서 '규칙' 으로 조정 	
2005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문화재연구원 재단 사옥 이주에 따른 분사무소 주소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번지 → 삭제 • 세계평화축전 사무처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분사무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산 228번지 - 변경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741번지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실내 팀명 변경 및 업무분장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팀 → 예술진흥팀 	

년도	일자	내 용	비고
2005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문원이 재단 사옥에 통합됨에 따라 행정을 일원화시키고, ‘전통문화실’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사업을 추진토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문원 관리팀 폐지 - 기문원 연구실 → 조사연구실, 전통문화실 ※ 조사연구실 내 ‘행정지원’ 업무 신설 • 각 실·팀별로 나뉘어져 있는 정원표를 통합·조정 ○취업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부설기관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음. ○연봉제 운영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 3급 이하 직원에서 적용되는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초과근무수당 제외 시간을 주40시간에 맞추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토록 개정 - 포괄임금제하 초과근무수당 제외시간 : 50시간 → 40시간 ○재무회계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재단 예산 성립(추가경정예산편성)전에 발생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개정 - “성립 전 예산” 조항 추가 ○위촉직운영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 연봉지급기준표 부가급여 항목상의 ‘상여금’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도록 수정함. • 위촉직 채용자격 기준을 전문계약직 공무원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함. 	
	1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사업운영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탁요율을 수탁사업비의 10%이내에서 30%이내로 확대하고, 수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수탁료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 - 기준 수탁료율 : 10% → 30% - 인건비 지급 : 수탁사업비(실행예산) → 수탁료 범위내 ※ 재단 수입·지출예산에 ‘위탁인건비’ 편성 집행 - 수탁료 징수시기 : 사업종료 후 → 협약 체결직후 - 수탁료 조건표 : 삭제 ○위촉직운영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 최소 승진대상 연수 조정 - 위촉직 1~2급 : 5년 → 4년 - 위촉직 3~4급 : 5년 → 3년 ○재단 제안제도운영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의 종류, 자격, 범위, 절차, 심의, 평가지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함. 	

제4절. 기구 및 정원현황

1. 기구

2실(4팀, 1소) 1원(2실) 1대학(2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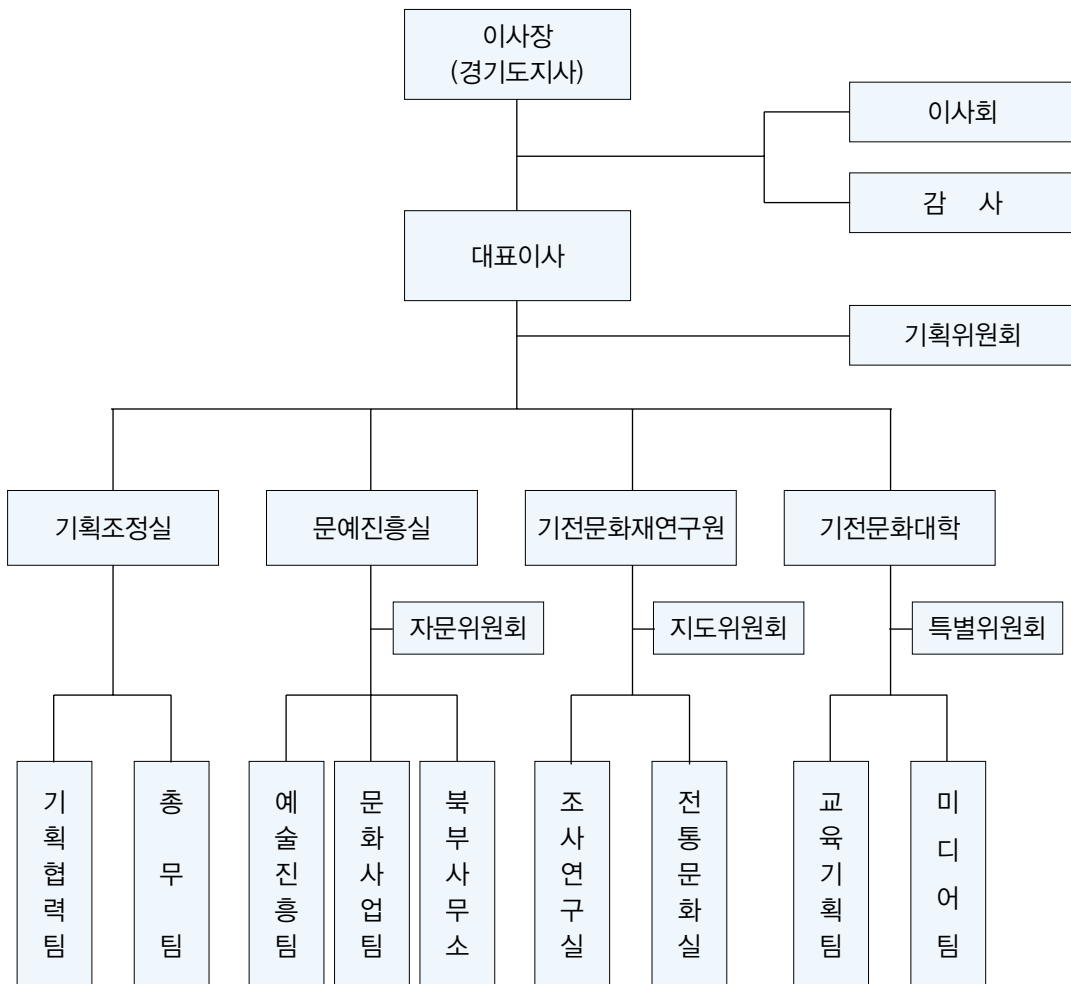


그림 4-1 경기문화재단 조직도

2. 정원현황

46명(임명직1, 행정직20, 전문직25)

(2005. 12. 31 현재)

직 제		정 원						
계		46명						
임 명 직	소계	대 표 이 사						
	1명	1						
행 정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명	1	3	4	5	4	3	
전 문 직	소계	전문직 가급		전문직 나급		전문직 다급		전문직 라급
	25명	3		7		7		8

제5절. 사옥 및 임대현황

1. 사옥개요

○준 공 일 : 1993. 9. 14

○규 모 : 지하2층, 지상9층, 옥탑1층

○면 적

- 연 건 평 : 14,744.7㎡(4,460평)
※재단사용(2,803), 임대(1,657평)
- 대지면적 : 4,530.1㎡(1,370평)
- 건축면적 : 1,871.06㎡(566평)
- 조경면적 : 232평(17%) ※ 법정(15%)

○건 축 물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외부 : 화강석버너)

- 건 폐 율 : 41.3% (용적율 241.89%)
- 지목 및 용도 : 대지(일반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방화지구)
- 주차시설 : 130대(옥외 59, 지하71) ※법정(125대)

2. 임대현황

○업 체 수 : 17개 업체

- 금융2, 여행사1, 언론2, 판매장1, 문화단체3, 회계사2, 꽃집1, 청소년자원봉사센터1, 청소년종합상담실1, 기획사1.
- 무상임대(4개소)
 -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민예총 경기도지회, 경기 언론인 클럽

○면 적 : 1,657평(5,479m²)

○임대수입 : 454,627천원(연간)

- 임대보증금 : 3,135,029천원×3.8%(예치금리) = 119,131천원
- 임 대 료 : 월27,958천원×12개월 = 335,496천원

제6절. 이사 및 감사현황

(2005. 12.31현재)

직책	소속·직위	성명	소속 및 경력
이사장	경기도지사	손학규	서강대교수, 정치학박사,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송태호	대통령비서실 공보비서관·교육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문화체육부장관
당연직 이사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이재영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안중 제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김선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성남시 시의회 의원,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위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장	김종기	총회신학대 졸업 수원문화원장, 동남보건대학 이사
"	한국예총 도연합회장	정규호	서라벌예대,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 수필가협회 회장
"	도 문화관광국장	신광식	안성부시장, 국무총리실 근무
"	도 문화의전당 사장	홍사종	러시아 Herzen국립교육대 정동극장 극장장, 숙명여대 교수
"	도 박물관장	이종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서울시립박물관장,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부회장
선임직 이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고병헌	고려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성공회대 교수 및 사회교육센터 소장
"	경기대 건축과 교수	김동욱	일본 와세다대학원, 건축공학박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도 문화재위원
"	동덕여대 명예교수	박용숙	연세대 대학원, 동덕미술관 관장 동덕여대 미술학부 교수
"	대진대 인문대 교수	이근영	건국대 대학원, 문학박사 대진대 교무처장 및 인문대학장
"	수원대 인문대 교수	이주향	이화여대 대학원, 한국영상문화학회 KBS, EBS 등 문화관련 방송진행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임헌영	중앙대 대학원, 참여사회아카데미 원장
당연직 감사	도 문화정책과장	박신환	경기도 법무담당관
선임직 감사	공인회계사	김면기	경기도 고문회계사 화성상공회의소 자문위원

※ 17명(당연직이사9, 선임직이사6, 감사2)

제7절. 주요 이사회 내용

구분	일 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1차	'97. 4.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경기문화재단 설립계획 3. 정관 제정(안) 4. 직제 및 정원 규정(안) 5. 인사관리규정(안) 6. 보수 및 수당 규정(안) 	경기도주관
제2차	'97. 7. 2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경기문화재단 선임직감사 선임(안) 3. 경기문화재단 규정·규칙등 제정 규정(안) 4.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안) 5.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관리규정(안) 6. 97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 7. 97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계획 8. 97년도 경기문화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차	'97. 10.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중 개정(안) 3. 인사관리규정중 개정(안) 4.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중 개정(안) 5. 경기문화재단 직원복무규정(안) 6. 경기문화재단 퇴직기금 운용·관리규정(안) 7.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8. 97년도 경기문화재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97년도 경기문화재단 퇴직기금 운용계획(안) 10. 경기도로부터 이관승계된 '97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계획(안) 11. '97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결정(안) 	
제4차	'97. 10. 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97 하반기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비 지원내역 정정(안) 	
제5차	'97. 12.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경기문화재단재무회계 규정 중 개정(안) 3. 경기문화재단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4. 98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계획(안) 5. 98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98년도 경기문화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98년도 경기문화재단 퇴직기금 운용계획(안)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6차	'97. 12. 30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 중 개정정관(안) 3. 직제및정원규정 중 개정규정(안) 4. 인사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5. 보수 및 수당규정 중 개정규정(안) 6.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7. 97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계획 변경(안) 8.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97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변경(안)	
제7차	'98. 2. 27	1. 이사회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경기문화재단 감사규정(안) 3.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 발행규정(안) 4. 인사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5.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중 개정규정(안) 6. 경기문화재단육성기금 운용·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7. 경기문화재단퇴직기금 운용·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8. 경기문화재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 9. '98 문예진흥지원금신청사업 지원결정(안) 10. '98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98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98 경기문화재단퇴직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97회계연도 결산(안)	
제8차	'98. 9. 22	1. 임원선임안	
제9차	'98. 10. 23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이사선임(안) 2. 정관 중 개정정관(안) 3. 보수 및 수당규정 중 개정규정(안) 4.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중 개정규정(안) 5. 경기문화재단 직원복무규정 중 개정규정(안) 6. 경기문화재단 감사규정 중 개정규정(안) 7. 경기문화재단 자문위원회 구성 및운영규정 중 개정 규정(안) 8.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발행규정 중 개정규정(안) 9.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10차	'98. 11. 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 중 개정 정관(안) 3.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운영규정(안) 4.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개정규정(안) 5. 보수 및 수당규정 중 개정규정(안) 6. 99년도 사업계획(안) 7.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세안(안) 8. 99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99년도 경기문화재단 퇴직기금 운용계획(안) 	
제11차	'99. 2.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보수 및 수당규정 중 개정규정(안) 3.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중 개정규정(안) 4. '99 문예진흥지원금 지원사업 심사(안) 5. '98 경기문화재단 사업계획 변경(안) 6.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98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제2회 변경운용계획(안) 	
제12차	'99. 1. 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9년도 문예진흥지원사업 결정(안) 	
제13차	'99. 3. 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인사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3.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4. 경기문화재단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 5. 경기문화재단 부설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 6. 99년 추가사업 계획(안) 7.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8. 9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9. 98년도 종합감사 보고 	
제14차	'99. 5. 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차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선임직 이사 선임(안) 3.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발행규정 중 개정규정(안) 4. 사업폐지(안) 5.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15차	'99. 9. 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선임직감사 선임(안) 3. 직제 및 정원규정 중 개정규정(안) 4. 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안) 5. 경기문화재단 부설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 6. 사업계획변경(안) 7. 199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16차	'00. 1. 13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0년도 사업계획(안) 3.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0년도 문예진흥지원금 지원사업 심사(안) 5. 2000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00년도 경기문화재단 퇴직기금 운용계획(안) 7. 정관 중 개정 정관(안)	
제17차	'00. 2. 9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이사 선임(안) 2. 2000년도 문예진흥지원금 신청사업 결정(안) 3. 보수 및 수당규정 중 개정규정(안) 4. 경기문화재단 직원복무규정 중 개정규정(안)	
제18차	'00. 3. 21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이사 선임(안) 2. '99 회계연도 결산(안) 3. 정관중 개정정관(안) 4. 직제 및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안) 5. 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6. 보수 및 수당규정중 개정규정(안) 7. 경기문화재단재무회계규정중 개정규정(안) 8.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9. 99년도 종합감사 보고	
제19차	'00. 7. 13	1. 사무총장 임명동의(안) 2. 선임직이사 선임(안) 3. 직제 및 정원규정 중 개정규정(안) 4. 위촉직전문위원 운영규정 제정(안) 5. 2000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6.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20차	'00. 12. 29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이사 선임(안) 2. 기본재산 취득(안) 3. 2000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21차	'01. 2. 9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이사 선임(안) 2. 2001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3. 2001년도 사업계획(안) 4. 2001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01년도 경기문화재단 퇴직기금 운용계획(안) 6. 보수 및 수당규정 중 개정규정(안) 7.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예술 발행규정 중 개정규정(안)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22차	'01. 3. 27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0년도 결산(안) 3. 2001년도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 지원결정(안) 4. 직제 및 정원규정 중 개정규정(안) 5.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6. 2000년도 종합감사보고	
제23차	'01. 6. 29	1. 이사회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 개정(안) 3. 재단사옥 매입 잔금 지급(안) 4. 선임직이사 추가선임(안)	
제24차	'01. 7. 24	1. 이사회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직제 및 정원규정 중 개정규정(안) 3. 사업추가 및 변경계획(안) 4.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25차	'01. 11. 16	1. 이사회회의록기명날인이사선임(안) 2. 정관개정(안) 3. 경기문화재단 기부금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안) 4. 선임직감사 선임(안) 5. 사업계획변경(안) 6.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26차	'02. 1. 16	1. 이사회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2년도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02년도 사업계획(안) 4. 200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5. 2002년도 퇴직기금 운용계획(안) 6. 경기문화재단 용역사업 운영규정 제정(안)	
제27차	'02. 3. 29	1. 이사회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개정(안) 3. 기전문화대학 설치 운영계획(안) 4. 2001년도 결산(안) 5. 2002년도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사업지원사업 결정(안) 6. 2002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7.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8. 수입증대방안(보고)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28차	'02. 6. 3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 개정(안) 3. 재단기 및 심볼마크에 관한 규정(안) 4.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5. 사무관리규정 제정(안) 6. 고문번호사 운영규정 제정(안) 7.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8.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9. 기전문화예술발행규정 개정(안) 10. 2002년도 사업계획변경(안) 1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29차	'02. 9. 12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개정(안)	
제30차	'02. 9. 12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제31차	'02. 10. 18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2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4. 건물임대규정 제정(안) 5.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6.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7. 직원복무규정 개정(안) 8. 제규정 제정관리규정(안) 9. 기본재산임대(안)	
제32차	'02. 12. 30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3년도 사업계획(안) 3. 2003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4. 2003년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03년도 퇴직기금 운용계획(안) 6. 정관개정(안) 7.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8. 용역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9.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10.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11. 기전문화대학 운영규정 개정(안)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33차	'03. 2. 28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2년도 결산(안) 3. 2003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4.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5.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6.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4차	'03. 5. 28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선임직 이사 선임(안)	
제35차	'03. 6. 16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건물임대규정 개정(안) 3. 기본재산(건물) 임대(안)	
제36차	'03. 10. 2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3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4.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5.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제37차	'03. 12. 23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선임직 감사 선임(안) 3. 2003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4.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5. 정관 개정(안) 6.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7.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8. 취업규정 제정(안) 9. 연봉제운영규정 제정(안) 10. 위촉전문직운영규정 개정(안) 11. 기전문화예술발행규정 개정(안) 12. 기전문화재단연구원운영규정 개정(안) 13. 2004년도 사업계획(안) 14. 200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15. 2004년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38차	'04. 2. 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3년도 결산(안) 3. 2004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4.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5.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6. 취업규정 개정(안) 7. 위촉직운영규정 개정(안) 8. 용역사업운영규정 개정(안) 9. 연구직운영규정 제정(안) 	
제39차	'04. 6. 2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4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4. 정관 개정(안) 5.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6. 취업규정 개정(안) 7. 연봉제운영규정 개정(안) 	
제40차	'04. 9.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대표이사 선임(안) 3. 2004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4.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5. 정관 개정(안) 	
제41차	'04. 12.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4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3.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4. 2005년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05년도 사업계획(안) 6. 2005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7. 기본재산(건물) 무상임대(안) 8.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2차	'05. 2. 2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4년도 결산(안) 3. 2005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5. 정관 개정(안) 6.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7. 취업규정 개정(안) 8. 연봉제운영규정 개정(안) 9.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10. 위촉직운영규정 개정(안) 11. 연구직운영규정 개정(안) 	

구분	일자	심 의 안 건	비고
제43차	'05. 5. 25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정관 개정(안) 3. 건물임대계약(안) 4. 2005년도 사업계획 추가 및 변경(안) 5.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입·지출(안)	
제44차	'05. 12. 14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선임(안)	
제45차	'05. 12. 14	1.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 이사선임(안) 2. 2005년도 사업계획 변경(안)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4. 2006년도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5. 2006년도 사업계획(안) 6. 2006년도 수입·지출예산(안) 7. 사무관리규정개정(안) 8. 용역사업운영규정개정(안) 9. 위촉직운영규정개정(안) 10. 부설기전문화재단연구원연구직운영규정개정(안) 11. 제안제도운영규정제정(안)	